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 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 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지 : 1992. 10. 29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 10. 31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1.6 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유용현)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나. 주요 골자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전영수)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0.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 관리)

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의 운용관을 두어야 한다.

위 관련 법규 근거와 1992년 8월 21일자 부산직할시 준칙안에 준하여 본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므로 일선 행정 기관인 기초 자치 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소홀없이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허성준 위원	유용현 사회과장	<p>'불우이웃돕기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 요망'</p> <p>'이웃돕기를 선정할 때 선정 위원을 위원도 몇 분 참여 시킬 수 있는지 요망'</p>	<p>'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어 시행 규칙에서 기준을 정하겠음.'</p> <p>'시행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겠음.'</p>
김한민 위원	"	<p>'사회복지시설에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조례대로라면 이중이 안되는지 설명 요망'</p> <p>'재해의연금이 불우이웃돕기 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 요망'</p>	<p>'규정된 시설 수용자 지원의 경우 명절 때 별도 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임.'</p> <p>'이제민 기금과는 별도의 것이며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이제민을 이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임.'</p>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정경화 위원	유용현 사회과장	'언말에 각동별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할당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 요망'	'언말에 목표액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언론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모금을 함. 그런데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에서 모금된 총금액을 부산시에 기탁 하며 시에서는 각 구별로 배분 해 주고 있음.'
박병화 위원	"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란 무엇인지 설명 요망'	'기금이 조성되면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이체를 시켜 기금 운용'
정호기 위원	"	'이 앤이 통과되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예측모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요망' '기금이나 성금을 내면 세제 혜택이 있는지 설명 요망'	'예측을 할 수 없고 본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71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관을 해 가지고 운용할 것임.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인곤 위원	"	'목적없이 기탁했을 경우 우선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설명 요망'	'시행규칙에 기준을 설정하겠음.'
정호기 위원	"	'작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본회의 때 전의원에게 배포 가 될 수 있도록 요망'	'그렇게 하겠음.'
박병화 위원	"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의 운용관을 두어야 한다에 대한 설명 요망'	'기금의 종류란, 이웃돕기 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집행부서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금이 있는것을 말함.'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이웃돕기 성금 집행 현황

년도별	수 입				지 출			
	계	이월금	구자체	시지원	계	불우영세민	불우시설	보훈단체
92년도	153,705,245	48,736,925	12,493,720	92,474,600	147,133,050	106,966,500	35,004,550	5,162,000